

의안번호	제 25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4월 11일

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

의안
번호

252

제출연월일 : 2023년 4월 11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530억원 규모로 2006. 1. 16일자에 설립되었고, 2009. 3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(772억원)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.
- 공사는 현재 9건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고 향후 3건의 신규 사업을 계획·검토 중에 있으나, 새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%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추진의 여력이 한계에 도달함('26년 325.2% 예상).
- 또한, 관광사업 등 신사업 분야로 공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, 이에 따른 자본금 출자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출자 계획(안)

구 분	2023년	2024년
현금 출자액	300억원	200억원

※ 출자 총액 : 180,175,900천원 (기출자 : 130,175,900천원)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(안)

I 추진 배경

① 출자 필요성

-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 관리 필요
 - 부채중점관리기관*을 선정, 재무·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
 - * 부채규모 1천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% 이상('21년 공사 부채 4,030억원)
 - 출자 규모 최하위로 사업추진에 한계, 부채비율 지속 상승 예상
- 충북도 정책사업 추진 등 공사의 역할 확대에 재무기반 마련 필요
 - 관광사업 등 신사업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출자 필요
 - * (신사업 분야) 관광사업, 스마트농업, 청주 원도심 도시재생 등
 - 오송 제3국가산단 등 대규모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재무적 여력 확보

② 공사 자본금 현황(2021년말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합 계	출 자 금			이익잉여금 (~'21)	비 고
		계	설립('06. 1)	1차('09. 3)		
합 계	3,006	1,302	530	772	1,704	
현 금	1,908	204	204	-	1,704	
현 물	1,098	1,098	326	772	-	

* 타 시·도 15개 도시개발공사와 비교 : 자본금 13위, 출자금 15위

* 부채비율 : '21년 결산 기준 134.1%, '26년 325.2%까지 상승 예상

II 출자 계획(안)

○ 신사업 분야 최소 소요재원 규모는 970억원으로 예상됨

* [신사업] 청남대 활성화사업(200), 청주 원도심 도시재생(400), 농업단지 조성(370) 등

○ 부채비율 200%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조정과 더불어 500억원 정도의 추가 출자가 필요함

* [규모 축소]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(52→35만평) / [SPC 전환] 오창 나노 산단

< 사업조정 및 출자 효과분석 >

구 분	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기본 현황	부채총계	5,223	7,524	11,736	13,510	12,612
	자본규모	3,338	3,720	3,985	4,154	4,375
	부채비율	156.5%	202.3%	294.5%	325.2%	274.4%
① 넥스트폴리스 산단 규모 조정 시 부채	부채총계	5,223	6,134	8,635	9,986	8,878
	부채비율	156.5%	164.9%	216.7%	240.4%	202.9%
② 오창 나노 산단 SPC 전환 시 부채	부채총계	5,223	5,716	7,172	7,526	6,836
	부채비율	156.5%	153.7%	180.0%	181.2%	156.3%
③ 출자 시 자본	부채총계	3,638	4,220	4,485	4,654	4,875
	부채비율	143.6%	135.5%	159.9%	161.7%	140.2%

* 신사업 분야 소요재원 970억원 반영 시, 최고 부채비율은 182.6%('26년)

▶ 향후 신사업 분야 확대 및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500억원 출자 필요
다만,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'23년 300억원, '24년 200억원 출자

붙임 1 시도 개발공사(15개) 자본금 및 재무현황 ('21년 결산 기준)

(단위 : 명, 억원)

기관명	설립	정원 (현원)	출자 자본금	2021년 결산 결과				
				자산	자본	부채	부채 비율	당기 순이익
SH공사(서울)	1989	1,386 (1,359)	71,195	271,481	95,140	176,341	185%	1,398
부산도시공사	1991	306 (291)	6,205	29,614	19,248	10,366	54%	94
대구도시공사	1988	169 (168)	2,723	19,533	6,946	12,256	177%	370
인천도시공사	2003	417 (419)	25,110	88,030	28,905	59,125	205%	3,036
광주도시공사	1993	294 (285)	1,952	10,944	4,445	6,499	146%	179
대전도시공사	1993	948 (902)	2,309	10,488	4,543	5,945	131%	263
울산도시공사	2007	60 (61)	1,400	5,675	2,807	2,868	102%	(112)
GH공사(경기)	1997	713 (668)	17,311	106,775	46,408	60,367	130%	3,572
강원개발공사	1997	117 (113)	3,365	13,875	1,214	12,661	1,043%	(1,691)
충북개발공사	2006	86 (85)	1,302	7,036	3,006	4,030	134.1%	123
충남개발공사	2007	99 (96)	3,425	10,016	5,597	4,419	79%	598
전북개발공사	1998	94 (91)	1,374	7,194	3,401	3,793	112%	37
전남개발공사	2004	136 (128)	3,907	10,633	6,936	3,697	53%	391
경북개발공사	1997	130 (127)	2,834	10,858	8,372	2,486	30%	236
경남개발공사	1997	102 (95)	1,379	11,158	4,569	6,590	144%	(28)

※ 15개 시도 평균 출자 자본금 : 9,719억원(시 평균 1조 5,842억원 / 도 평균 4,362억원)

붙임 2 충북개발공사 세부 출자현황

(단위 : 건, 천㎡, 백만원)

구 분	출자 총액			최초 출자 (‘06년 설립자본)			추가 출자 (‘09년)			비고	
	필지	면적	금액	필지	면적	금액	필지	면적	금액		
계	235	497	130,176	136	163	52,966	99	334	77,210		
현 금			20,359			20,359			0		
현 물	소 계	235	497	109,817	136	163	32,607	99	334	77,210	
	밀레니엄 타운 부지	146	435	92,054	47	101	14,844	99 9종	334 건물등	76,947 263	일부 매각
	가경지구 (미분양용지)	2	4	4,535	2	4	4,535	-	-	-	매각 완료
	부용산단 (미분양용지)	2	10	928	2	10	928	-	-	-	매각 완료
	중평지구 (미분양용지)	5	4	1,038	5	4	1,038	-	-	-	매각 완료
	가경지구 (연부용지)	5	19	8,896	5	19	8,896	-	-	-	매각 완료
	중평지구 (연부용지)	75	25	2,366	75	25	2,366	-	-	-	매각 완료

붙임 3 주요 추진사업 현황(자체사업 기준)

구 분	사업 면적 (천㎡)	사업비 (억원)	미상환 공사채 (억원)	공사채 발행예정(억원)					비고			
				소계	'23	'24	'25	'26		'27		
진행사업	청주 밀레니엄타운	637	2,952	300	-	-	-	-	-	-	2016~2028	
	제천 3산단	1,092	1,241	250	-	-	-	-	-	-	2015~2023	
	동충주 산단	1,405	2,151	300	-	-	-	-	-	-	2014~2023	
	음성 인곡산단	1,730	3,450	864	900	900	-	-	-	-	2017~2024	
	청주 북이산단	1,012	2,605	500	1,150	600	550	-	-	-	2018~2026	
	청주 넥스트 폴리스 산단	1,724	10,418	-	5,900	-	1,200	3,000	1,400	300	-	2019~2028
	진천 혁신산단	1,344	3,242	-	2,250	-	900	1,000	350	-	-	2020~2027
	청주 오창 나노산단	1,504	2,950	-	2,370	-	400	1,000	970	-	-	2020~2028
	음성 감곡 역세권	239	926	-	380	-	100	200	80	-	-	2020~2027
소계	10,687	29,935	2,214	12,950	1,500	3,150	5,200	2,800	-			
검토사업	제천 4산단	818	1,224	-	미정						-	
	오송 3산단	6,750	33,910	-	미정						-	
	에어로 3지구	1,290	1,397	-	미정						-	
	소계	8,858	36,531	-	-							
합계	19,545	66,466	2,214	12,950	1,500	3,150	5,200	2,800	-			

붙임 4 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- 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,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-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의안번호	제 252-1 호
의 결 연 월 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수정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4월 17일

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수정계획안

의안 번호	252-1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4월 1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530억원 규모로 2006. 1. 16일자에 설립되었고, 2009. 3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(772억원)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.
- 공사는 현재 9건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고 향후 3건의 신규 사업을 계획·검토 중에 있으나, 새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%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추진의 여력이 한계에 도달함('26년 325.2% 예상).
- 또한, 신사업 분야로 공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, 이에 따른 자본금 출자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출자 계획(안)

구분	2023년	2024년
현금 출자액	300억원	200억원

※ 출자 총액 : 180,175,900천원 (기출자 : 130,175,900천원)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수정계획(안)

I 추진 배경

① 출자 필요성

-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 관리 필요
 - 부채중점관리기관*을 선정, 재무·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
 - * 부채규모 1천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% 이상('21년 공사 부채 4,030억원)
 - 출자 규모 최하위로 사업추진에 한계, 부채비율 지속 상승 예상
- 도 정책사업 추진 등 공사의 역할 확대에 건전한 재무기반 마련 필요
 - 오송 제3국가산단 등 대규모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재무적 여력 확보
 - 신사업 분야로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출자 필요

② 공사 자본금 현황(2021년말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합 계	출 자 금			이익잉여금 (~'21)	비 고
		계	설립('06. 1)	1차('09. 3)		
합 계	3,006	1,302	530	772	1,704	
현 금	1,908	204	204	-	1,704	
현 물	1,098	1,098	326	772	-	

* 타 시·도 15개 도시개발공사와 비교 : 자본금 13위, 출자금 15위

* 부채비율 : '21년 결산 기준 134.1%, '26년 325.2%까지 상승 예상

II 출자 계획(안)

○ 부채비율을 200%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,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

* [규모 축소]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/ [추진방식 변경(SPC)] 오창 나노 산단

○ 신사업 분야 소요재원 규모는 최소 1,000억원 정도로 관리기준 내에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함

* [투자 계획] 향후 3년간('24~'26년) 1,000억원 규모의 사업 발굴 및 추진(검토사업 3곳 미정)

< 사업조정 및 출자 효과분석 >

구 분	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기본 현황	부채총계	5,223	7,524	11,736	13,510	12,612
	자본규모	3,338	3,720	3,985	4,154	4,375
	부채비율	156.5%	202.3%	294.5%	325.2%	288.3%
① 넥스트폴리스 산단 규모 조정 시 부채	부채총계	5,223	6,134	8,635	9,986	8,878
	부채비율	156.5%	164.9%	216.7%	240.4%	202.9%
② 오창 나노 산단 SPC 전환 시 부채	부채총계	5,223	5,716	7,172	7,526	6,836
	부채비율	156.5%	153.7%	180.0%	181.2%	156.3%
③ 신사업 추진 시 부 채	부채총계	5,223	6,016	7,772	8,526	7,836
	부채비율	156.5%	161.7%	195.0%	205.2%	179.1%
④ 출자 시 자본	자본규모	3,638	4,220	4,485	4,654	4,875
	부채비율	143.6%	142.6%	173.3%	183.2%	160.7%

▶ 향후 신사업 분야 확대 및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500억원 출자 필요
다만,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'23년 300억원, '24년 200억원 출자

붙임 1 시도 개발공사(15개) 자본금 및 재무현황 (2021년 결산 기준)

(단위 : 명, 억원)

기관명	설립	정원 (현원)	출자 자본금	2021년 결산 결과				
				자산	자본	부채	부채 비율	당기 순이익
SH공사(서울)	1989	1,386 (1,359)	71,195	271,481	95,140	176,341	185%	1,398
부산도시공사	1991	306 (291)	6,205	29,614	19,248	10,366	54%	94
대구도시공사	1988	169 (168)	2,723	19,533	6,946	12,256	177%	370
인천도시공사	2003	417 (419)	25,110	88,030	28,905	59,125	205%	3,036
광주도시공사	1993	294 (285)	1,952	10,944	4,445	6,499	146%	179
대전도시공사	1993	948 (902)	2,309	10,488	4,543	5,945	131%	263
울산도시공사	2007	60 (61)	1,400	5,675	2,807	2,868	102%	(112)
GH공사(경기)	1997	713 (668)	17,311	106,775	46,408	60,367	130%	3,572
강원개발공사	1997	117 (113)	3,365	13,875	1,214	12,661	1,043%	(1,691)
충북개발공사	2006	86 (85)	1,302	7,036	3,006	4,030	134.1%	123
충남개발공사	2007	99 (96)	3,425	10,016	5,597	4,419	79%	598
전북개발공사	1998	94 (91)	1,374	7,194	3,401	3,793	112%	37
전남개발공사	2004	136 (128)	3,907	10,633	6,936	3,697	53%	391
경북개발공사	1997	130 (127)	2,834	10,858	8,372	2,486	30%	236
경남개발공사	1997	102 (95)	1,379	11,158	4,569	6,590	144%	(28)

※ 15개 시도 평균 출자 자본금 : 9,719억원(시 평균 1조 5,842억원 / 도 평균 4,362억원)

붙임 2 충북개발공사 세부 출자현황

(단위 : 건, 천㎡, 백만원)

구 분	출자 총액			최초 출자 (‘06년 설립자본)			추가 출자 (‘09년)			비고	
	필지	면적	금액	필지	면적	금액	필지	면적	금액		
계	235	497	130,176	136	163	52,966	99	334	77,210		
현 금			20,359			20,359			0		
현 물	소 계	235	497	109,817	136	163	32,607	99	334	77,210	
	밀레니엄 타운 부지	146	435	92,054	47	101	14,844	99 9종	334 건물등	76,947 263	일부 매각
	가경지구 (미분양용지)	2	4	4,535	2	4	4,535	-	-	-	매각 완료
	부용산단 (미분양용지)	2	10	928	2	10	928	-	-	-	매각 완료
	중평지구 (미분양용지)	5	4	1,038	5	4	1,038	-	-	-	매각 완료
	가경지구 (연부용지)	5	19	8,896	5	19	8,896	-	-	-	매각 완료
	중평지구 (연부용지)	75	25	2,366	75	25	2,366	-	-	-	매각 완료

붙임 3 주요 추진사업 현황(자체사업 기준)

구 분	사업 면적 (천㎡)	사업비 (억원)	미상환 공사채 (억원)	공사채 발행예정(억원)					비고		
				소계	'23	'24	'25	'26		'27	
진행사업	청주 밀레니엄타운	637	2,952	300	-	-	-	-	-	-	2016~2028
	제천 3산단	1,092	1,241	250	-	-	-	-	-	-	2015~2023
	동충주 산단	1,405	2,151	300	-	-	-	-	-	-	2014~2023
	음성 인곡산단	1,730	3,450	864	900	900	-	-	-	-	2017~2024
	청주 북이산단	1,012	2,605	500	1,150	600	550	-	-	-	2018~2026
	청주 넥스트 폴리스 산단	1,724	10,418	-	5,900	-	1,200	3,000	1,400	300	2019~2028
	진천 혁신산단	1,344	3,242	-	2,250	-	900	1,000	350	-	2020~2027
	청주 오창 나노산단	1,504	2,950	-	2,370	-	400	1,000	970	-	2020~2028
	음성 감곡 역세권	239	926	-	380	-	100	200	80	-	2020~2027
소계	10,687	29,935	2,214	12,950	1,500	3,150	5,200	2,800	-		
검토사업	제천 4산단	818	1,224	-	미정						-
	오송 3산단	6,750	33,910	-	미정						-
	에어로 3지구	1,290	2,329	-	미정						-
	소계	8,858	37,463	-	-						
합계	19,545	67,398	2,214	12,950	1,500	3,150	5,200	2,800	-		

붙임 4 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,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